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0.19.] [환경부령 제717호, 2017.10.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2년 동안 3회 이상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순환진흥과 순환토사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의무사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 환경부령 제71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배출량"을 "총 발생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새로이 배출되는"을 "새로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월"을 "9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 중 "1퍼센트"를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마목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를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별표 2 제2호가목(8) 및 (9)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비

(1)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2)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3호마목 중 "(6)~(8)"를 "(6), (7) 및 같은 호 나목 (1)"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3 위반행위란 3)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목 5) 및 6)을 각각 7) 및 8)로 하며, 같은 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 제4호	승인취소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 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별표 3 제2호나목7(중전의 5)) 근거법령란 중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법 제25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목8(중전의 6)) 근거법령란 중 "법 제25조제4항제3호"를 "법 제2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 등급란 제4호나목 및 제5호나목 중 "기사"를 각각 "산업기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탁계약		기성실적	
	수탁량(톤)	계약금액(천원)	처리량(톤)	금액(천원)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총계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으로 기재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 제목 "중간·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을 "중간·최종 처리자 보관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